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신규 어린이놀이시설 신고제도 도입 등의 내용으로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신규 어린이놀이시설 신고 시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를 제14조의2로 하고,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(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신고)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어린이 놀이기구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설치신고서를 관리감독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0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안전관리지원기관은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이수한 경우 1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교육 이수증을 교부하고, 안전교육 이수정보를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.

별표 1 제1호 다목 중 “위반행위의 공기, 위반의 정도,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정한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.”를 “행정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정한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 할 수 있다.”로 하고, 세호1부터 세호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)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

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
2) 위반행위자가 스스로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
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별지 제14호의2서식 중 “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·교육장”을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·교육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 제14조(설치검사의 신청 서류 등) ① (생 략) ② (생 략) 제20조(안전교육) ① ~ ⑦ (생 략) <신 설> [별표 1]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1. 일반기준 가. (생 략)	<u>제14조(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신고)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설치신고서를 관리감독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 제14조의2(설치검사의 신청 서류 등) ① (현행 제14조제1항과 같음) ② (현행 제14조제2항과 같음) 제20조(안전교육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 ⑧ <u>안전관리지원기관은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이수한 경우 1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증을 교부하고, 안전교육 이수정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.</u> [별표 1]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1. 일반기준 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(생략)

다. 위반행위의 동기, 위반의 정도,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정한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.

[별지 제14호의2서식]

설치검사 불합격
시설개선계획서

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제13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개선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제출인 (서명또는 인)

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

·구청장·교육장 귀하

나. (현행과 같음)

다. 행정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정한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.

- 1)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스스로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[별지 제14호의2서식]

설치검사 불합격
시설개선계획서

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제13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개선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제출인 (서명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

시장·군수·구청장·교육장 귀하

어린이놀이시설 설치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()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10일
------	-----	-----	------	-----

설치자	상호(법인명)	사업자등록번호	전화번호
	성명		생년월일

설치신고 세부현황	관리주체 성명	시설명					
	사무실 전화번호	주소					
	설치 현황	설치장소 (시행령 별표 2 중 선택)	민간/ 공공구분	실내/실외 구분	물이용 놀이기구 유무	설치일	

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놀이 시설의 설치를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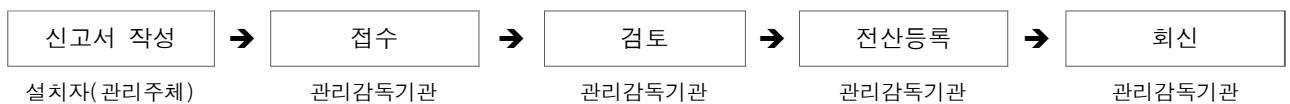
설치자(관리주체)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
· 시장·군수·구청장·교육장 귀하

붙임서류	없음	수수료 없음
------	----	--------

처리절차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안전교육 이수증 번호
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증

안전 관리자	성명(교육이수자)
	기관명
	소재지
	교육과정 및 일시

위 안전관리자는 「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」 제20조에 의한 교육을 이수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안전관리지원기관장

직인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